

목 차

지방세(시세)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 (용산구)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

2018. 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자치구의 지방세(시세) 부과·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지방재원 확충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음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용산구청
- 감사기간 : 2017.10.30.~11.10.(기간 중 10일간)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등 6명(공익감사단 1명 포함)
- 감사범위 : 2013년 이후 처리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중점

- 취득세 등 과소·미신고 및 중과세 누락 여부
- 취득세 등 감면 적정 여부
- 지방세 감면·체납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 여부
-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 부과·징수실태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통보(모범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정 (환수)	감액						
18	12	2,286,951			16 (2,286,951)	16 (2,286,951)	1 (12)						1 (2)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현황

연번	감사분야	관련부서	지적내용	처분요구			조치 현황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		
					종류	금액(천원)	
1	취득세 중과 분야	세무1과	지점설치 및 본점 전임에 따른 중과세 추정 누락((주)A 등 2)	시정	추징	309,969	완료
2		세무1과	법인 본점사업용 중과세 추정 누락 ((주)C 등 3)	시정	추징	190,021	완료
3		세무1과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추정 누락 (갑 등 3)	시정 주의	추징	1,015,316	완료
4	취득세 일반 분야	세무1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정·무 등 6)	시정	추징	176,253	완료
5		세무1과	무허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부적정(G(주))	시정	추징	21,406	완료
6		세무1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과세표준 적용 부적정((유)H 등 3)	시정	추징	16,848	완료
7		세무2과	기계장비 과세표준 누락 등 ((주)I 등 2)	시정	추징	21,597	완료
8		세무1과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을을 등 12)	시정	추징	3,280	완료
9	감면 분야	세무1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취득세 등 미징수(J 등 2)	시정	추징	119,873	완료
10	재산세 분야	세무1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착오 등에 따른 부족징수((주)K 등 10)	시정	추징	145,080	완료
11		세무1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징수(L(주) 등 5)	시정	추징	48,460	완료
12	주민세 분야	세무2과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M(주) 등 9)	시정	추징	133,340	완료
13		세무2과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N(주) 등 84)	시정	추징	28,184	완료
14		세무2과	주민세 법인군등분 미부과 ((사)O 등 222)	시정	추징	23,563	완료
15	지방소득세 분야	세무2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P(주) 등 4)	시정	추징	30,328	완료
16		세무2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주)Q 등 14)	시정	추징	3,433	완료
17	모범사례	세무1과	적극행정으로 고액 체납 징수	통보	-	-	진행중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1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309,969,220원	3	
제 목	대도시내 지점설치 및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주)A 등 2)					
<p>【 지적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에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인 1천분의 80(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p>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호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날 또는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차액분”이라 한다)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경기도 화성시에 본점을 소재하고 있는 (주)A(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는 '13.12.23. 한남동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630,510,000 원에 취득하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167,003,4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그러나, 해당 법인은 '15.12.17.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분을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그런데도, 용산구에서는 해당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지점 설치를 하고 지점 설치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차액분 취득세 등 계 238,139,64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 이와 같이, 용산구에서는 '17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계 238,138,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는 등 총 2개소 법인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계 309,969,22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표] 취득세 등 추징내역

(2017.11.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법인명	취득일	중과사유일	계	본세	가산세
	계			309,969,220	229,056,000	80,913,220
1	(주)A	'13.12.23.	'15.12.17. (지점 설치일)	238,139,640	174,427,200	63,712,440
2	(주)B	'15.05.29.	'16.06.02. (본점 전입일)	71,829,580	54,628,800	17,200,780

【 조치할 사항 】

○ **용산구청장은**

-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및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하는 [표] “취득세 등 추징내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 등 계 309,969,22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1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190,020,850원	3	
제 목	법인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주)C 등 3)					
<p>【 지적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 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의 표준세율(신·증축 : 1천분의 28, 유상거래 :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호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차액분”이라 한다)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주)C(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는 '16.9.6. 신계동 부동산을, '16.9.9. 같은 동 부동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17.3.29. 양 지상 토지에 건축물 334.68㎡를 건축(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하고,

- '17.4.1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비 등 취득가격 267,336,364원을 과세 표준으로 원시취득 표준세율에 해당하는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8,447,8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그러나, 해당 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17.3.29. 본점 사무소를 대도시에 해당하는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용산구에서는 해당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중과세율(1천분의 68)을 적용한 취득세 등 계 20,210,61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28로 산출한 8,447,810원을 신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납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였다.

- 또한, 해당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차액분 취득세 등 계 85,208,840원(가산세 포함)을 추정하지 아니하였다.

- 이와 같이, 용산구에서는 '17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계 98,623,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는 등 총 3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계 190,020,850원(가산세 포함)을 추정하지 아니하였다.

[표] 취득세 등 추정내역

(2017.11.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법인명	취득일	본점사용일	계	본세	가산세
	계			190,020,850	147,128,320	42,892,530
1	(주)C	'17.03.29.	'17.03.29.	98,623,220	80,445,380	18,177,840
2	(주)D	'14.07.24.	'15.12.01. '17.06.30.	88,889,570	62,073,520	22,816,050
3	(주)E	'14.06.10.	'14.12.04.	6,508,060	4,609,420	1,898,640

【 조치할 사항 】

○ 용산구청장은

-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표] “취득세 등 추정내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 등 계 190,020,850원(가산세 포함)과 추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3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1과	2017 (2018.1.)	시정요구 주의요구	추징	1,015,316,290원	-	
제 목	고급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갑 등 3)					
<p>【 지적내용 】</p> <p>○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p> <p>○ 구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제11조의 표준세율(신·증축 : 1천분의 28, 유상거래 : 1천분의 40)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신·증축 : 1천분의 108, 유상거래 : 1천분의 12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다.</p> <p>-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p> <p>-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호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p>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차액분”이라 한다)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갑(이하 “해당 당사자”라 한다)은 '14.5.27. 한남동 토지 3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80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128,8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그리고, '15.5.21. 이 건 토지에 지하1층~지상3층 건축물 581.87㎡를 신축(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하고 공사비 등 계 1,321,274,6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41,752,2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건축물현황 : 지하1층 : 259.05㎡(사무소 170.9㎡, 주차장 88.15㎡)
지상1층 : 110.3㎡(주택), 지상2층 106.59㎡(주택), 지상3층 105.93㎡(주택)

- 그러나, 감사기간 중인 '17.11.9. 이 건 부동산을 확인한 결과 당초 사무실 용도로 사용 승인된 지하1층 170.9㎡ 중 121.66㎡를 주택의 부속용도(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총 주거용 면적은 444.48㎡임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해당 당사자는 이 건 부동산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그런데도, 용산구에서는 해당 당사자가 이 건 토지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차액분 취득세 등 511,940,68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 이와 같이, 용산구에서는 '17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계 511,940,6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는 등 총 3명의 고급주택 신·증축에 대한 취득세 등 계 1,015,316,2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표] 취득세 등 추징내역

(2017.11.10. 기준, 단위 : 원)

연번	성명	취득일	중과사유일	계	본세	가산세
	계			1,015,316,290	762,782,370	252,533,920
1	갑	'14.05.27.(토) '15.05.21.(건)	'15.05.21. (사용승인일)	511,940,680	362,672,150	149,268,530
2	을	'14.07.15.(토) '15.07.30.(건)	'16.03.01. (임대일)	420,757,540	317,492,150	103,265,390
3	병	'15.09.24.(건)	'17.10.30. (현장확인일)	82,618,070	82,618,070	-

※ 연번 3 병은 감사기간 중인 '17.11.9. 자진신고

-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주택의 신축 및 증축이 발생하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취득세, 재산세(주택)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의 “건물특성 조사요령”에 의하면 건물 용도는 “주건물 동 전체에 대한 용도”를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용산구에서는 위 3건의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현

황조사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에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는 지하층의 실제 사용현황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 **용산구청장은**

- 고급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하는 [표] “취득세 등 추징내역” 상의 연번 1,2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 등 계 932,698,220원(가산세 포함)과 추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감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한 연번 3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후 미납 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그리고, 앞으로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한 개별주택 조사 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련 조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4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1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176,252,560원	3	
제 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정·무 등 6)					
【 지적내용 】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용산구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주)F(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무는 법인 주식 총 1만주 중 4,500주(4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정이 '13.5.27. 주식 5,000주(50%)를 취득하여 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이 총 9,500주(95%)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 그런데, 용산구에서는 정·무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가액 중 과점주주 비율(95%)에 해당하는 가액(4,268,585,6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155,157,9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와 같이 '17년 11월 감사일 현재 관내 6개 사업소의 과점주주가 '13년 ~'16년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등 176,252,56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 총괄표					
(2017.11.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수	미부과건수	주식취득연도	취득세 등		
			계	본세	가산세
6	10	2013~2016	176,252,560	106,305,030	67,947,530

【조치할 사항】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상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 계 176,252,560원(가산세 포함)과 추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

(2017.11.10. 기준, 단위 : 원)

연 번	과점주주	소유주식			취득세 등 누락세액		
		법인명	주식변동내역		계	본세	가산세
			주식 취득일	과점(증가)비율			
	계				176,252,560	106,305,030	67,947,530
1	- , -	-	2013.5.27.	95% (0%→95%)	155,157,950	93,908,880	61,249,070
2	- , -	-	2014.8.1. 외2	25.794% (32.434→58.228%)	15,096,520	9,983,750	5,112,770
3	-	-	2015.11.23	3.64% (92.86%→96.5%)	3,296,750	390,310	906,440
4	-	-	2016.10.9.	2.81% (69.71%→72.52%)	869,240	677,560	191,680
5	-	-	2015.12.23	1.5% (66.96%→68.46%)	498,530	363,920	134,610
6	-	-	2016.8.19.	1% (68.71%→69.71%)	313,020	241,120	71,900
7	-	-	2015.9.9.	0.75% (76.02%→76.77%)	254,990	181,960	73,030
9	-	-	2016.08.1.	0.25% (68.46%→68.71%)	78,570	60,280	18,290
9	-	-	2015.12.29	1.4% (75.6→77%)	594,960	434,980	159,980
10	-	-	2014.12.23	0.02% (84.56%→84.58%)	92,030	62,270	29,760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5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1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21,406,310원	1	
제 목	무허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G(주))					
<p>【 지적내용 】</p> <p>○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p> <p>○ 구 「지방세법」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일반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40으로 하고 있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G(주)(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는 '15.9.21. 이태원동 소재지의 주택을 744,345,000원에 취득하면서 같은 날 취득 신고 시 주택세율에 해당하는 세율인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16,375,5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그러나, 해당 소재지 주택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주택으로 주택세율에 해당하는 1천분의 20의 세율이 아닌 일반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용산구에서는 해당 법인이 위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한 32,751,18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택세율에 해당하는 1천분의 20으로 산출한 16,375,590원을 신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납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였다.
- 그 결과, 용산구는 '17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계 21,406,310원(가산세 포함)을 부족하게 부과·징수하였다.

【표】 취득세 등 추정세액

(2017.11.10. 기준, 단위 : 원)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21,406,310	16,375,590	5,030,720

【 조치할 사항 】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표] “취득세 등 추정내역”상의 취득세 등 계 21,406,310원(가산세 포함)과 추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6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1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16,847,990원	1	
제 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유)H 등 3)					

【 지적내용 】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그 신고가액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다.
 -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H(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는 '15.5.6. 한강로3가 토지를 563,086,040원에 취득하면서 같은 날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인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25,901,95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724,000,000원이다.

-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매도자인 기, 경과 해당 법인의 주주인 신, 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신고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용산구에서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납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였다.

○ 그 결과, 용산구는 '17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법인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과 신고금액의 차액인 160,913,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계 10,086,970원(가산세 포함)을 부족하게 부과·징수 하는 등 3개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취득세 등을 부족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 계 16,847,990원(가산세 포함)을 추정하지 아니하였다.

[표] 취득세 등 추정내역

(2017.11.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매수자	매도자	관계	과세표준 차액	합 계	본 세	가 산 세
	계				16,847,990	12,641,410	4,206,580
1	-	-	친척	160,922,960	10,086,970	7,402,440	2,684,530
2	-	-	자녀	67,236,463	3,553,860	3,092,860	461,000
3	-	-	부	195,101,600	3,207,160	2,146,110	1,061,050

【조치할 사항】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표] “취득세 등 추정내역”상의 취득세 등 계 16,847,990원(가산세 포함)과 추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No. 7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용산구 세무2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21,596,870원	-	
제 목	기계장비 및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주)I 등 2)					
【 지적내용 】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계장비 과세표준 누락에 대한 취득세 등 미징수〉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가격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주)I(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는 '17.1.20.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후 '17.2.8.						

이 건 타워크레인 취득가격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4,08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그러나, '17년 11월 감사기간 중 해당 법인의 법인장부(중기 계정별원장)를 확인한 결과, 이 건 타워크레인 취득 당시 타워크레인 마스트 등을 함께 구입하면서 177,000,000원이 추가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 그런데도, 용산구에서는 해당 법인이 타워크레인 마스트 구입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 계 7,502,460원(가산세 포함)을 부족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17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기계장비 취득세 등 부족징수 명세”와 같이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계 20,480,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1] 기계장비 취득세 등 부족징수 내역							
(2017.11.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취득일	차량번호	누락 과세표준액	취득세 등		
					계	본세	가산세
	1개 사업주				20,480,620	15,946,000	4,534,620
1	-	2016.03.14.	-	147,000,000	6,505,230	4,998,000	1,507,230
2	-	2016.03.31.	-	145,000,000	6,472,930	4,930,000	1,542,930
3	-	2017.01.20.	-	177,000,000	7,502,460	6,018,000	1,484,460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후 미추징〉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용산구에서는 자동차등록매매업을 등록한 갑갑(이하 “해당 당사자”라 한다)이 '13.10.31.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13.11.6.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신고 시 취득세 791,000원을 감면하였으나,
 - 해당 당사자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15.10.30까지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고 '17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계 1,116,25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표2] 취득세 추징세액

(2017.11.10. 기준, 단위 : 원)

납세의무자	취득일	차량번호	과세표준액	취득세		
				계	본세	가산세
-	2013.10.31.	-	11,300,000	1,116,250	791,000	325,250

【 조치할 사항 】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표1] “기계장비 취득세 등 부족징수 명세”와 같이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계 20,480,620원(가산세 포함)과 추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부과·징수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단서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표2] “취득세 추징세액”과 같이 감면 이후 추정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계 1,116,250원(가산세 포함)과 추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8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1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3,279,850원	-	
제 목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을을 등 12)					

【 지적내용 】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 (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용산구에서는 '14.6.19. 을을이 관내 한남동 소재 건축물(연면적 : 240.31㎡)에 건축물 41.6㎡를 무단으로 증축한 후, 자진신고 납부기간(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계 946,02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와 같이 ‘17년 11월 감사일 현재 관내 12명(법인 포함)이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계 3,279,8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취득세 등 추정세액 총괄표

(2017.11.10. 기준, 단위 : 원)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3,279,850	2,487,060	792,790

【 조치할 사항 】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1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상의 취득세 등 계 3,279,850원(가산세 포함)과 추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별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

(2017.11.10. 기준,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취득원인	합계	본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12명			3,279,850	2,941,930	180,360	157,560
1	-	한남동	무허가건축물 (41.6)	946,020	850,730	42,350	52,940
2	-	문배동	무허가건축물 (34.23)	680,350	602,850	34,440	43,060
3	-	효창동	무허가건축물 (16)	350,990	316,410	15,370	19,210
4	-	청파동3가	무허가건축물 (23.4)	326,130	310,550	15,580	-
5	-	청파동3가	무허가건축물 (7.54)	105,070	100,060	5,010	-
6	-	이태원동	무허가건축물 (25)	253,950	205,720	38,920	9,310
7	-	효창동	연부취득 (6.8)	186,130	164,970	14,110	7,050
8	-	청파동1가	증축 (3.73)	150,930	135,630	6,800	8,500
9	-	원효로4가	무허가건축물 (18)	112,040	99,280	5,670	7,090
10	-	보광동	무단대수선 (99)	63,350	58,250	-	5,100
11	-	이촌동	무허가건축물 (4.32)	45,650	41,970	-	3,680
12	-	이태원동	무허가건축물 (10.8)	39,160	37,050	2,110	-
13	-	한강로3가	대수선 (32.23)	20,080	18,460	-	1,620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9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1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119,872,560원	2	
제 목	종교단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J 등 2)					
【 지적내용 】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를 과세 면제 받은 후에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용산구에서는 '13.12.5. J(이하 "해당 종교단체"라 한다)가 예배당 사용목적으로 관내 청과동3가 부동산을 1,558,0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같은 날 취득세 등 계 74,784,000원을 면제하였다.					
- 그러나, 해당 종교단체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16.12.4.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진신고 납부기간(30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 취득세 등 계 115,630,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는 등 총 2건의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계 119,872,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취득세 등 미징수 내역					
(2017.11.10. 기준, 단위 : 원)					
연번	종교단체	합 계	본 세	가 산 세	추징사유
	계	119,872,560	75,105,710	44,766,850	
1	-	115,630,080	71,668,000	43,962,080	유예기간 내 미사용
2	-	4,242,480	3,437,710	804,770	수익사업에 사용
【 조치할 사항 】					
○ 용산구청장은					
- 종교단체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 면적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표]의 종교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계 119,872,56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No. 10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1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145,080,260원	3	

제 목 과세대상 구분 적용 착오에 따른 재산세 등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주)K 등 10)

【 지적내용 】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4조 및 제116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대상은 매년 6.1.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7호 및 제119조 규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용산구는 (주)K(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4년, '15년 재산세 토지분

을 부과하면서 관내 한강로3가 토지 14,637㎡ 중 4,242㎡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용 토지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과세표준의 1천분의 2)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 그러나, 해당 법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14.2.12. 폐업이 되었으므로 해당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대상(290만원 + 과세표준액에서 10억 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 그 결과 해당 법인에 대하여 '14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56,014,760원과 '15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55,922,110원을 부족 징수하는 등 총 10개 소 재지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145,080,260원을 부족하게 부과·징수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분 등의 착오에 따른 [별표]의 재산세 등 계 145,080,260원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착오 등 내역

(2017.11.10. 기준, 단위 : 원)

연번	해당 연도	납세의무자	물건지	부과금액	변경	사유
		계		145,080,260		
1	2014	-	한강로3가	56,014,760	분리→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폐업
2	2015			55,922,110		
3	2014	-	한남동	4,018,780	별도→종합	나대지
4	2015			4,706,240		
5	2015	-	한강로3가	1,482,090	별도→종합	나대지
6	2016			1,482,090		
7	2017			1,503,250		
8	2015	-	한강로3가	1,084,600	별도→종합	나대지
9	2016			1,084,600		
10	2017			1,098,990		
11	2013	-	한남동	138,350	감면추징	일부 수익사업
12	2014			154,030		
13	2015			166,740		
14	2016			189,970		
15	2017			274,880		
16	2015	-	이태원동	734,160	감면추징	종교단체 고유사업 미사용
17	2016			803,260		
18	2017			906,300		
19	2016	-	문배동	453,950	별도→종합	나대지
20	2017			528,300		
21	2016	-	원효로2가	1,098,470	주택→근생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
22	2017			1,153,580		
23	2017	-	원효로2가	1,203,030	감면추징	종교단체 고유사업 미사용
24	2017	-	한남동	8,877,730	고급오락장 안분착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1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1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48,460,090원	-	
제 목	서울적용 착오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L(주) 등 5)					
【 지적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 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146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용산구는 '14년에 관내 동자동 건축물(24,378.12㎡)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 						

므로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하였다.

- 그 결과, '14년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17,542,540원을 부족하게 부과·징수하는 등 총 5개 소재지 건축물에 대하여 [표]와 같이 48,460,090원을 부족하게 부과·징수하였다.

[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적용 착오 내역

(단위 : 원)

연번	해당연도	납세의무자	소재지	부족 부과액	사유
			5개 건축물	48,460,090	
1	2014	-	동자동	17,542,540	판매시설
2	2014	-	한강로3가	16,958,330	복합건축물
3	2014	-	이태원동	4,493,020	호텔
4	2015	-	이태원동	4,490,920	호텔
5	2014	-	한강로2가	3,722,580	판매시설
6	2014	-	문배동	1,252,700	공장

【조치할 사항】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표]의 건축물 소재지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계 48,460,090원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2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용산구 세무2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133,340,470원	2	

제 목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M(주) 등 9)

【 지적내용 】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 규정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하고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84조의4 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3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의6 규정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M(주)(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는 2016년 1월분 급여 170,340,195원을

종업원 36명에게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851,700원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그런데도, 용산구에서는 해당 법인에 이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1,183,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와 같이 2017년 11월 감사일 현재 관내 9개 사업주가 2016년 1월~2017년 8월 귀속 주민세 종업원분 계 133,340,47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

(2017.11.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	주민세(종업원분)		
			계	본세	가산세
9	111	2016.1. ~ 2017.8.	133,340,470	104,542,750	28,797,720

【조치할 사항】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84조의 6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상의 주민세 종업원분 계 133,340,470원(가산세 포함)과 추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

(2017.11.10. 기준, 단위 : 명, 원)

연번	납세의무자	지급연월	종업원수	과세금여총액	주민세(종업원분)		
					계	본세	가산세
	9개 사업주				133,340,470	103,759,970	28,659,330
1	-	201601	36	170,340,195	1,183,770	851,700	332,070
2	-	201602	38	180,478,923	1,247,990	902,390	345,600
3	-	201603	40	177,018,664	1,215,570	885,090	330,480
4	-	201604	39	175,341,162	1,196,430	876,700	319,730
5	-	201605	40	178,069,627	1,206,750	890,340	316,410
6	-	201606	38	173,914,930	1,170,520	869,570	300,950
7	-	201607	38	185,728,019	1,241,670	928,640	313,030
8	-	201608	42	196,003,511	1,300,660	980,010	320,650
9	-	201609	42	192,644,859	1,270,290	963,220	307,070
10	-	201610	44	203,709,150	1,333,770	1,018,540	315,230
11	-	201611	44	207,294,658	1,347,300	1,036,470	310,830
12	-	201612	43	204,941,467	1,323,090	1,024,700	298,390
13	-	201701	43	209,203,125	1,340,870	1,046,010	294,860
14	-	201702	44	211,121,920	1,344,300	1,055,600	288,700
15	-	201703	44	211,864,022	1,339,180	1,059,320	279,860
16	-	201704	44	216,614,009	1,315,490	1,083,070	232,420
17	-	201705	49	234,542,064	1,413,460	1,172,710	240,750
18	-	201705	82	200,605,577	1,249,050	1,003,020	246,030
19	-	201706	92	221,655,005	1,370,810	1,108,270	262,540
20	-	201707	96	230,603,251	1,415,430	1,153,010	262,420
21	-	201708	95	236,806,849	1,442,140	1,184,030	258,110
22	-	201602	41	179,153,170	1,238,830	895,760	343,070
23	-	201603	41	150,514,000	1,033,570	752,570	281,000
24	-	201604	40	140,798,390	960,720	703,990	256,730
25	-	201605	38	131,562,730	891,590	657,810	233,780
26	-	201606	38	131,903,660	887,760	659,510	228,250
27	-	201607	39	139,964,800	935,720	699,820	235,900
28	-	201608	39	135,270,650	897,650	676,350	221,300
29	-	201609	36	131,549,380	867,410	657,740	209,670
30	-	201610	34	113,677,160	744,280	568,380	175,900

연번	납세의무자	지급연월	종업원수	과세급여총액	주민세(종업원분)		
					계	본세	가산세
31	-	201611	35	121,990,500	792,870	609,950	182,920
32	-	201612	36	128,720,240	831,010	643,600	187,410
33	-	201701	35	171,836,860	1,101,370	859,180	242,190
34	-	201702	33	141,086,000	898,350	705,430	192,920
35	-	201706	37	138,450,320	856,240	692,250	163,990
36	-	201707	35	140,684,820	863,510	703,420	160,090
37	-	201601	55	164,717,867	1,144,680	823,580	321,100
38	-	201602	55	163,912,012	1,133,440	819,560	313,880
39	-	201603	54	157,498,278	1,081,530	787,490	294,040
40	-	201604	57	162,733,477	1,110,390	813,660	296,730
41	-	201605	57	167,200,449	1,133,110	836,000	297,110
42	-	201606	55	168,984,795	1,137,340	844,920	292,420
43	-	201607	59	178,450,744	1,193,020	892,250	300,770
44	-	201608	60	198,409,463	1,316,620	992,040	324,580
45	-	201609	61	177,427,908	1,169,940	887,130	282,810
46	-	201610	60	208,028,433	1,362,050	1,040,140	321,910
47	-	201611	64	178,827,567	1,162,270	894,130	268,140
48	-	201612	63	183,842,484	1,186,880	919,210	267,670
49	-	201701	65	194,207,710	1,244,750	971,030	273,720
50	-	201702	65	189,473,510	1,206,460	947,360	259,100
51	-	201703	73	183,486,366	1,159,800	917,430	242,370
52	-	201704	80	183,996,821	1,154,200	919,980	234,220
53	-	201705	84	184,704,635	1,150,050	923,520	226,530
54	-	201706	80	193,127,122	1,194,380	965,630	228,750
55	-	201705	142	459,094,730	2,858,540	2,295,470	563,070
56	-	201706	176	708,416,340	4,381,190	3,542,080	839,110
57	-	201707	222	874,133,980	5,365,420	4,370,660	994,760
58	-	201708	218	772,355,570	4,703,630	3,861,770	841,860
59	-	201601	35	124,926,400	867,600	624,630	242,970
60	-	201602	35	123,323,870	851,280	616,610	234,670
61	-	201603	35	125,346,090	859,240	626,730	232,510
62	-	201604	35	129,650,400	883,110	648,250	234,860
63	-	201605	35	127,765,400	864,310	638,820	225,490
64	-	201606	35	126,860,040	852,300	634,300	218,000
65	-	201607	35	220,924,900	1,474,330	1,104,620	369,710
66	-	201608	35	126,496,620	837,900	632,480	205,420
67	-	201609	35	139,884,500	920,710	699,420	221,290

연번	납세의무자	지급연월	종업원수	과세급여총액	주민세(종업원분)		
					계	본세	가산세
68	-	201610	35	137,666,500	899,710	688,330	211,380
69	-	201611	35	145,497,610	943,890	727,480	216,410
70	-	201612	35	295,425,115	1,903,700	1,477,120	426,580
71	-	201701	35	123,343,390	789,070	616,710	172,360
72	-	201702	35	126,375,200	803,160	631,870	171,290
73	-	201703	35	132,782,960	837,710	663,910	173,800
74	-	201704	35	134,830,660	817,600	674,150	143,450
75	-	201705	35	130,367,460	784,080	651,830	132,250
76	-	201706	35	131,401,930	784,780	657,000	127,780
77	-	201707	35	212,458,290	1,259,010	1,062,290	196,720
78	-	201708	35	119,949,930	705,040	599,740	105,300
79	-	201610	17	161,694,689	1,056,740	808,470	248,270
80	-	201611	17	91,888,408	596,110	459,440	136,670
81	-	201612	17	357,084,674	2,301,040	1,785,420	515,620
82	-	201701	17	91,888,408	587,840	459,440	128,400
83	-	201702	17	223,033,505	1,417,470	1,115,160	302,310
84	-	201703	17	102,738,608	648,160	513,690	134,470
85	-	201704	17	151,897,039	921,090	759,480	161,610
86	-	201705	17	98,405,950	591,840	492,020	99,820
87	-	201706	17	97,561,750	582,660	487,800	94,860
88	-	201707	17	135,423,599	802,500	677,110	125,390
89	-	201708	17	97,561,750	573,440	487,800	85,640
90	-	201609	66	203,292,317	1,328,610	1,016,460	312,150
91	-	201610	66	184,502,054	1,196,950	922,510	274,440
92	-	201611	66	174,902,524	1,127,060	874,510	252,550
93	-	201612	66	274,218,666	1,754,300	1,371,090	383,210
94	-	201701	66	252,171,213	1,602,660	1,260,850	341,810
95	-	201702	66	180,733,144	1,140,230	903,660	236,570
96	-	201703	66	183,671,793	1,113,760	918,350	195,410
97	-	201704	66	174,645,257	1,050,390	873,220	177,170
98	-	201705	66	173,307,551	1,035,060	866,530	168,530
99	-	201706	66	173,017,626	1,025,290	865,080	160,210
100	-	201707	66	221,406,875	1,301,410	1,107,030	194,380
101	-	201708	66	187,507,619	1,036,900	937,530	99,370
102	-	201611	44	140,477,460	912,170	702,380	209,790
103	-	201612	44	212,226,577	1,368,850	1,061,130	307,720
104	-	201701	43	160,140,550	1,025,450	800,700	224,750

연번	납세의무자	지급연월	종업원수	과세급여총액	주민세(종업원분)		
					계	본세	가산세
105	-	201702	44	176,347,710	1,121,810	881,730	240,080
106	-	201703	45	142,529,830	900,050	712,640	187,410
107	-	201704	44	156,460,160	949,230	782,300	166,930
108	-	201705	45	150,163,770	904,040	750,810	153,230
109	-	201706	48	146,022,240	872,980	730,110	142,870
110	-	201707	48	171,204,720	1,015,570	856,020	159,550
111	-	201708	48	156,557,540	921,170	782,780	138,390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용산구 세무2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28,184,140원	-	
제 목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N(주) 등 84)						
<p>【 지적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80조 및 제8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같은 법 제82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 규정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7.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매년 납부할 세액을 7.1.부터 7.31.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N(주)(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는 서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소 연면적 							

5,292㎡에 대하여 '13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1,323,000원을 7.1부터 7.31.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그런데도, 용산구에서는 해당 법인에 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2,207,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와 같이 '17년 11월 감사일 현재 관내 84개 사업주가 '13년~'16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계 28,184,1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

(2017.11.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	주민세(재산분)		
			계	본세	가산세
84	115	2013~2016	28,184,140	18,857,870	9,326,270

【 조치할 사항 】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상의 주민세 재산분 계 28,184,140원(가산세 포함)과 추정 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주민세 재산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별표]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

(2017.11.10. 기준,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 년도	연면적	주민세(재산분)		
				계	본세	가산세
	84개 사업주			28,184,140	18,857,870	9,326,270
1	-	2013	5,292	2,207,950	1,323,000	884,950
2	-	2013	451	188,160	112,750	75,410
3	-	2013	470	196,090	117,500	78,590
4	-	2013	497	207,360	124,250	83,110
5	-	2013	331	138,100	82,750	55,350
6	-	2013	660	275,360	165,000	110,360
7	-	2013	466	194,420	116,500	77,920
8	-	2013	416	173,560	104,000	69,560
9	-	2013	392	163,550	98,000	65,550
10	-	2013	466	194,420	116,500	77,920
11	-	2013	377	157,290	94,250	63,040
12	-	2013	2,332	972,960	583,000	389,960
13	-	2013	1,105	461,030	276,250	184,780
14	-	2013	337	140,600	84,250	56,350
15	-	2013	666	277,870	166,500	111,370
16	-	2013	787	328,350	196,750	131,600
17	-	2013	420	175,230	105,000	70,230
18	-	2013	580	241,990	145,000	96,990
19	-	2013	809	337,530	202,250	135,280
20	-	2013	375	156,450	93,750	62,700
21	-	2013	458	191,080	114,500	76,580
22	-	2013	368	153,530	92,000	61,530
23	-	2013	351	146,440	87,750	58,690
24	-	2013	383	159,790	95,750	64,040
25	-	2013	336	140,180	84,000	56,180
26	-	2013	557	232,390	139,250	93,140

27	-	2013	590	246,160	147,500	98,660
28	-	2013	938	391,350	234,500	156,850
29	-	2014	470	183,220	117,500	65,720
30	-	2014	840	327,470	210,000	117,470
31	-	2014	506	197,260	126,500	70,760
32	-	2014	345	134,490	86,250	48,240
33	-	2014	331	129,040	82,750	46,290
34	-	2014	352	137,220	88,000	49,220
35	-	2014	380	148,140	95,000	53,140
36	-	2014	971	378,540	242,750	135,790
37	-	2014	660	257,300	165,000	92,300
38	-	2014	466	181,670	116,500	65,170
39	-	2014	416	162,170	104,000	58,170
40	-	2014	377	146,970	94,250	52,720
41	-	2014	419	163,340	104,750	58,590
42	-	2014	440	171,530	110,000	61,530
43	-	2014	478	186,340	119,500	66,840
44	-	2014	351	136,830	87,750	49,080
45	-	2014	383	149,310	95,750	53,560
46	-	2014	336	130,980	84,000	46,980
47	-	2014	938	365,670	234,500	131,170
48	-	2015	476	172,530	119,000	53,530
49	-	2015	343	124,320	85,750	38,570
50	-	2015	493	178,700	123,250	55,450
51	-	2015	345	125,050	86,250	38,800
52	-	2015	331	119,970	82,750	37,220
53	-	2015	593	214,940	148,250	66,690
54	-	2015	356	129,040	89,000	40,040
55	-	2015	745	270,040	186,250	83,790
56	-	2015	849	307,740	212,250	95,490
57	-	2015	2,019	731,640	504,620	227,020
58	-	2015	528	191,380	132,000	59,380
59	-	2015	486	176,160	121,500	54,660
60	-	2015	971	351,960	242,750	109,210

61	-	2015	471	170,720	117,750	52,970
62	-	2015	825	299,040	206,250	92,790
63	-	2015	392	142,090	98,000	44,090
64	-	2015	403	146,070	100,750	45,320
65	-	2015	2,966	1,075,100	741,500	333,600
66	-	2015	452	163,830	113,000	50,830
67	-	2015	391	141,720	97,750	43,970
68	-	2015	394	142,810	98,500	44,310
69	-	2015	352	127,590	88,000	39,590
70	-	2015	509	184,490	127,250	57,240
71	-	2015	1,365	494,770	341,250	153,520
72	-	2015	440	159,480	110,000	49,480
73	-	2015	819	296,860	204,750	92,110
74	-	2015	678	245,750	169,500	76,250
75	-	2015	992	359,570	248,000	111,570
76	-	2015	364	131,940	91,000	40,940
77	-	2015	547	198,270	136,750	61,520
78	-	2015	660	239,230	165,000	74,230
79	-	2015	362	131,210	90,500	40,710
80	-	2015	368	133,390	92,000	41,390
81	-	2015	560	202,980	140,000	62,980
82	-	2015	938	340,000	234,500	105,500
83	-	2016	466	156,080	116,500	39,580
84	-	2016	476	159,430	119,000	40,430
85	-	2016	3,335	1,117,050	833,750	283,300
86	-	2016	493	165,130	123,250	41,880
87	-	2016	342	114,550	85,500	29,050
88	-	2016	345	115,550	86,250	29,300
89	-	2016	331	110,860	82,750	28,110
90	-	2016	593	198,620	148,250	50,370
91	-	2016	502	168,140	125,500	42,640
92	-	2016	849	284,370	212,250	72,120
93	-	2016	427	143,020	106,750	36,270
94	-	2016	486	162,780	121,500	41,280

95	-	2016	382	127,950	95,500	32,450
96	-	2016	466	156,080	116,500	39,580
97	-	2016	727	243,500	181,750	61,750
98	-	2016	962	322,220	240,500	81,720
99	-	2016	550	184,220	137,500	46,720
100	-	2016	354	118,570	88,500	30,070
101	-	2016	1,501	502,750	375,250	127,500
102	-	2016	452	151,390	113,000	38,390
103	-	2016	493	165,130	123,250	41,880
104	-	2016	428	143,350	107,000	36,350
105	-	2016	363	121,580	90,750	30,830
106	-	2016	331	110,860	82,750	28,110
107	-	2016	391	130,960	97,750	33,210
108	-	2016	394	131,970	98,500	33,470
109	-	2016	352	117,900	88,000	29,900
110	-	2016	1,365	457,200	341,250	115,950
111	-	2016	404	135,310	101,000	34,310
112	-	2016	714	239,150	178,500	60,650
113	-	2016	678	227,090	169,500	57,590
114	-	2016	660	221,060	165,000	56,060
115	-	2016	368	123,260	92,000	31,260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4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2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23,562,500원	-	
제 목 주민세 법인균등분에 대한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사)O 등 222)						
【 지적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규정에 따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법인균등분은 매년 8. 1.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사업소의 종업원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표준세율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용산구에서는 (사)O이 '13.8.1. 기준으로 한강로2가에서 500백만 원의 자본금과 2명의 종업원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임에도,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계 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와 같이 '17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222개 사업주에게 281건의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계 23,5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

(2017.11.10. 기준, 단위 : 천,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	주민세(법인균등분)		
			계	본세	지방교육세
222	281	2013~2017	23,562,500	18,850,000	4,712,500

【 조치할 사항 】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별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상의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계 23,5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별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

(단위 : 원)

연번	누락연도	법인명	합계	본세	지방교육세
1	2013	-	62,500	50,000	12,500
2	2013	-	62,500	50,000	12,500
3	2013	-	62,500	50,000	12,500
4	2013	-	62,500	50,000	12,500
5	2013	-	250,000	200,000	50,000
6	2013	-	62,500	50,000	12,500
7	2013	-	62,500	50,000	12,500
8	2013	-	62,500	50,000	12,500
9	2013	-	62,500	50,000	12,500
10	2013	-	250,000	200,000	50,000
11	2013	-	62,500	50,000	12,500
12	2013	-	250,000	200,000	50,000
13	2013	-	62,500	50,000	12,500
14	2013	-	62,500	50,000	12,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8	2016	-	62,500	50,000	12,500
269	2016	-	62,500	50,000	12,500
270	2016	-	62,500	50,000	12,500
271	2016	-	250,000	200,000	50,000
272	2017	-	62,500	50,000	12,500
273	2017	-	250,000	200,000	50,000
274	2017	-	437,500	350,000	87,500
275	2017	-	250,000	200,000	50,000
276	2017	-	62,500	50,000	12,500
277	2017	-	62,500	50,000	12,500
278	2017	-	62,500	50,000	12,500
279	2017	-	62,500	50,000	12,500
280	2017	-	62,500	50,000	12,500
281	2017	-	250,000	200,000	50,000
합 계			23,562,500	18,850,000	4,712,500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5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용산구 세무2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30,328,230원	1	
제 목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P(주) 등 4)					
【 지적내용 】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표준세율로 하고,						
- 같은 법 제91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일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그리고, 같은 법 제91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P(주)(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는 '13.5.28. 영등포세무서로부터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69,693,802원을 '13.6.30. 납부기한으로 경정결정 받았						

으나, 납부기한인 '13.6.30.부터 1개월 내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6,969,380원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그런데도, 용산구에서는 해당 법인에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28,788,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와 같이 '17년 11월 감사일 현재 총 4개 사업주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 30,328,23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

(2017.11.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국세청 등 통보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계	본세	가산세
4	5	2013.1.~2013.9.	30,328,230	17,870,300	12,457,930

【 조치할 사항 】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상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 30,328,23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

(2017.11.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국세청 등 통보월	법인세 결정금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계	본세	가산세
	4개 사업주				30,328,230	17,870,300	12,457,930
1	-	2012	2013.05.	169,693,802	28,788,540	16,969,380	11,819,160
2	-	2008	2013.01.	2,996,350	524,400	299,630	224,770
3	-	2009	2013.01.	1,872,490	325,950	187,240	138,710
4	-	2012	2013.06.	1,295,880	217,410	129,580	87,830
5	-	2010	2013.09.	2,844,770	471,930	284,470	187,460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6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용산구 세무2과	2017 (2018.1.)	시정요구	추징	3,432,790원	-	
제 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주)Q 등 14)					
【 지적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96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주)Q(이하 “해당 법인”이라 한다)는 '09년 12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70,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2,223,900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인 '10.1.10.까지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22,3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그런데도, 용산구에서는 해당 법인에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44,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와 같이 '17년 11월 감사일 현재 관내 14개 사업주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 3,432,79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

(2017.11.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국세청 등 통보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계	본세	가산세
14	17	2013.01.~2016.05.	3,432,790	3,120,780	312,010

【조치할 사항】

○ 용산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96조 규정에 따라 2017.11.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상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 3,432,790원(가산세 포함)과 추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별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

(2017.11.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년월	국세청 등 통보월	소득세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계	본세	가산세
	14개 사업주				3,432,790	3,120,780	312,010
1	-	2009.12	2013.01	2,223,900	244,620	222,390	22,230
2	-	2011.01	2013.01	1,009,250	111,010	100,920	10,090
3	-	2010.01	2013.01	1,009,250	111,010	100,920	10,090
4	-	2009.01	2013.01	1,060,400	116,640	106,040	10,600
5	-	2010.07	2013.02.	1,320,000	145,200	132,000	13,200
6	-	2011.02	2013.03	1,490,190	163,910	149,010	14,900
7	-	2010.03	2013.03	3,564,330	357,000	324,550	32,450
8	-	2010.04	2013.03	3,334,250	332,800	302,550	30,250
9	-	2012.04	2013.04	1,227,950	135,060	122,790	12,270
10	-	2013.01	2013.04	1,187,530	130,620	118,750	11,870
11	-	2013.03	2013.06	2,265,710	249,220	226,570	22,650
12	-	2011.01	2015.03	2,716,510	298,810	271,650	27,160
13	-	2012.01	2015.10	1,398,040	153,780	139,800	13,980
14	-	2013.01	2015.12	1,471,800	161,890	147,180	14,710
15	-	2015.01	2016.05	72,000	7,920	7,200	720
16	-	2012.01	2016.05	2,591,030	285,010	259,100	25,910
17	-	2013.01	2016.05	3,893,660	428,290	389,360	38,930

감사 모범사례

No. 17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용산구 세무1과	2017 (2018.1.)	통보	-	-	-	

제 목 적극적인 행정으로 파산법인에 대한 고액 체납징수

【 사례내용 】

- 용산구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밀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R(주)(이하 “체납 법인”이라 한다)는 000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07년 설립되었으며, 한강로3가 일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세계적 금융위기 및 사업 투자자 확보에 실패하여 '13년 5월경 채권단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나게 되었다.
 - 체납 법인의 부도 이후 000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체납되기 시작하였으며, '13년 10월 말에는 체납 세액이 총 17,236백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용산구 세무1과 법인조사팀에서는 '13년 10월 법인의 체납징수를 위하여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출장 조사하고, 관련 법인인 S사 사업추진단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던 중 체납법인이 채권단에 이자를 지급한 후 일부 잔액이 은행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은행예금은 채무 발생 시 선순위 압류권자에게 우선 배분되기 때문에 신속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여 징수업무 담당 팀은 아니지만 취득세 부과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납 법인을 파악하고 있던 법인조사팀에서 직접 채권확보 및 징수를 하게 되었다.
- '13년 10월말 체납법인의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임을 확인하였고, 시기가 촉박하여 '13.11.3. 우리은행의 전 계좌를 포괄 압류하였고 계좌내역 및 거래내역을 발급받았다.
 - 이후 '13.11.5. 우리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은행 계좌의 잔액이 서울지방법원 공탁계에 “상대적 불확지”의 사유로 공탁되어 있어 추심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재차 우리은행을 방문 조사한 바, 체납법인의 임의적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이 하나은행에 수탁되어 있고 하나은행에서 예금의 입·출금 등 일체의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사항도 하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래서, '13.11.7. 하나은행 본점에 출장하여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채권인 “금전채권신탁 제2종 수익권” 4건을 확인하여 압류 조치하였고, 당일 서울지방법원 공탁계에 출장하여 체납법인의 주거래은행에서 공탁한 공탁사건을 압류조치 한 후, 다음 날 공탁사건 열람 및 복사를 하여 공탁사건에 대한 압류 순위 및 채권회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 공탁사건 압류에 대하여 하나은행에서는 '13.11.12. “금전채권신탁 제2종 수익권” 및 공탁금의 압류권자인 서울지방국세청과 용산구청에 공탁사건에 대한 출급을

동의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용산구에서는 '13.11.22. 하나은행과 면담을 통해 출급 동의 시 용산구가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과의 수차례 업무 협의를 거친 후 공탁사건 출급에 동의를 하였다.

○ 그 결과 '13.11.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나은행이 체납법인의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출급금액 중 8,691백만 원을 이체 받아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 처리함으로써 체납 세액을 징수하여 세수확보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8,691백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통보)